

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를 당해도 안심할 수 있어요!



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?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」 개정에 따라 '17.1.8 부터 시행중인 보험으로, 음식점의 화재, 폭발,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합니다.



1층에 있는 100m² 이상 시설 의무가입

- 1층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 중 100m² 이상 시설 (영업신고증 면적 기준)



- 1층 외에 다른 층에 있는 음식점이라도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는 100m² 이상의 시설은 의무가입대상



2017년 7월 7일 까지 가입해야

- 신규 음식점 : 영업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
- 기존영업점 (2017년 1월 7일 이전 신고 시설) : 2017년 7월 7일 까지 가입



연간 보험료 2만원으로 음식점 이용객 등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 보장

- 100m² 음식점 기준 연간 보험료는 2만원, 300m² 정도는 2만8천원 수준
※ 단, 보험료는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- 제3자 인명피해는

1인당 1억 5천만원 까지 (사고당 무한)

재산피해는 **1사고 당 10억원 까지** 보장

※ 원인불명의 화재, 폭발, 붕괴 손해도 보장



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

-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
※ '17.12.31 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

가입의무 위반 기간	과 태 료
30일 이하	30만원
30일 초과 60일 이하	30만원 +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
60일 초과	120만원 +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



특수건물에 있는 일반·휴게음식점은 가입 제외

- 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에 위치한 일반·휴게음식점

특수건물

- 연면적의 합계가 3,000m² 이상인 병원, 관광숙박업소, 공연장, 농수산물도매시장, 학교
- 바닥면적의 합계가 3,000m² 이상인 일반숙박업소, 대규모점포
- 바닥면적의 합계가 2,000m² 이상인 일반·휴게음식점
- 아파트, 주차빌딩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물

-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반·휴게 음식점

다중이용업소

- 2층 이상에 위치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상인 시설
-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m² 이상인 시설

-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가 있는 국·공유시설에 위치한 일반·휴게음식점



FAQ

자주 묻는 질문

- 화재·영업배상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,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?

보상한도* 및 담보 범위 등이 달라 가입해야 합니다.
영업배상보험 유지 시에는 중복되는 보험료가 할인되고,
해약할 경우에는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.

* 화재·영업배상보험에서는 대인에 대해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나,
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고당 무한

-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,
‘17.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는데
왜 가입기한(‘17.7.7)내 가입해야 하나요?

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가 가입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,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*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은
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합니다.

[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예시] 제9조(의무보험과의 관계)

-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.
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힘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
제1항의 “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”으로 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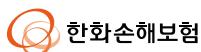


가입 문의전화

*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(☎02-3702-8500)로 전화주세요.



1566-7711



1566-8000



1588-3344



1688-1688



1588-5114



1588-5656



1544-0114



1588-0100



1566-3000



1644-9000



국민안전처
안전한 나라, 행복한 국민